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0. 7(월)

건 설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9. 17.

라. 상정일자 : 2013. 10. 7.(제211회 임시회 제3일차 건설교통위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지 않은 승용차10부제 내용을 정비하고,

○ 주차장유료화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시설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중 승용차10부제 관련 내용을 정비함.

○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 중 주차장유료화 부담금 경감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부담금을 10% 경감받은 사례가 있는지와 경감률 20% 상향 시 유료화 전환 가능성 등 실효성에 대한 설명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16개 시,도 중 유료화 경감률을 20%로 상향한 시도는? (전원기 의원)

⇒ 광역시 중 서울, 대구, 대전(30%), 울산, 광주시가 20% 이상임.

○ 실제 유료로 운영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 (전원기 의원)

⇒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서류상으로만 유료로 운영하는 편법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전원기 의원)

⇒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도형, 이재병, 김병철, 정수영, 이재호, 전원기, 전용철 의원

- 원안에 동의함.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담금”이라 함은”을 ““부담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량”이라 함은”을 ““교통량”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승용차”라 함은”을 ““승용차”란”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승용차5부제”라 함은”을 ““승용차5부제”란”으로, ““승용차요일제”라 함은”을 ““승용차요일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승용차 2부제”라 함은”을 ““승용차2부제”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중”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시차출근제”라 함은”을 ““시차출근제”란”으로,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을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출·퇴근시”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승용차 함께타기”라 함은 출·퇴근시”를 ““승

용차 함께타기”란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로, “1인”을 “1명”으로, “출·퇴근”을 “출근·퇴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부설주차장 개방”이라 함은”을 ““부설주차장 개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출·퇴근”을 “출근·퇴근”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층”을 각각 “각 층”으로, “3,000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층”을 각각 “각 층”으로, “3,000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호”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50”을 “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 이라

한다)”을 “경감대상시설물”로, “각층”을 “각 층”으로,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10대이상인”을 “10대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되, 승용차 2·5·10부제”를 “하며, 승용차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계산하되”를 “계산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범위 안”을 “각 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10부제”를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을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으로, “진·출입하게”를 “진입·출입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진·출입”을 “진입·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5·10부제”를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

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를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경감율”을 “경감률”로 하고, 같은 표의 제1호 주차장유료화의 부담금 경감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시행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1. “부담금”이란 ---------- ---------- ---------- ---------- -----.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 ---------- ---------- ---- 해당 ---------- ---------- ---------- ----------.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3. “승용차”란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 제6조에 따른 ----------.
4.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승용차5부제”에 포함한다)	5. “승용차5부제”란 ---------- ---------- ---------- ---------- ---------- ---------- ---------- ---------- “승용차요일제”란 ---------- ---------- ---------- ---------- ---------- --------
6.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2부제”란 ---------- ---------- ---------- ---------- ---------- --------.

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7. ---------- ----------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 ---------- ---. ---------- ---------- 해당 ---- ---------- ---------- ---------- ---------- ---------- ---------- ---------- ----------.
8. “시차출근제”라 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시차출근제”란 ---------- ----------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 ---------- ----------. --- ---------- ---------- ---------- ----------.
9. “통근버스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	9. ---------- ----------

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 .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승용차 함께타기"라 함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말한다.	12.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 1명 ---------- 출근·퇴근 ---------- .
13."부설주차장 개방"이라 함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13."부설주차장 개방"이란 ---------- ----.
14.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4. ---------- 출근·퇴근----------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생 략)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의 수가 시설물의 연면적 200제곱미	② ---------- ----------

터당 1인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명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	1. 각 층 ---------- 3천제곱미터 ---------- 각 층 ----------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50원	2. 각 층 ---------- 3천제곱미터 ---------- 각 층 ----------
제5조(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표 2	제5조(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호----------

의 유발계수의 3분의1을 적용한다.	---------- 3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대상 시설물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받는 분할 소유된 시설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6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시설물에 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7조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13조의 부담금경감신청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조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부담금은 변화된 교통유발	③ 제1항에 따라 ----------

량 비율만큼으로 하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50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시행기간만큼 경감한다.	----------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 경감대상시설물 ---- 각 층 ---------- 1천제곱미터 ---------- 10대 이상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생 략)	제8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	② ----------

활동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 하며, 승용차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생략)	제9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 계산하며, ----------.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생 략)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2회 확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연 2회 ----------.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 제1항의 규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호의 범위----------. ----------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1. ----------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를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 진입·출입하게 ---------
3. 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3. ---------- 진입·출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6시 이전과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는 제2조제9호의 “통근버스 운행”으로 본다.	5. 제2조제8호에 따라 ----------.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6. ---------- 2부제·5부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발계수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부담금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 제6조에 따라 ---------- 따른 ----------.
②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	② ----------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

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 각 호----------.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량조사 및 경감비율 등 결정	1. 제6조에 따른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2. 제10조에 따른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신청접수 및 경감비율결정 등	3. 제13조에 따른 ----------
제15조(징수교부금 교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제15조(징수교부금 교부) ---------- 해당 ----------.